

ESG측면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김동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¹⁾ 권용만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²⁾

국문 요약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용,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중심어: ESG경영, 법인격 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1)제1저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paxkim5805@naver.com

2)교신저자: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ymkwon@nsu.ac.kr

· 투고일: 2021-10-14 · 수정일: 2021-11-12 · 게재확정일: 2021-12-02

I. 서론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ESG정보의 품질과 양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공시제도의 정비와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안수연, 2021). 우리나라 법률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권재열, 2019)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며 또 단체 재산(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에게 주어 진 자연인의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 진 인격 즉,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격부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영국, 미국, 독일, 일본에서 연혁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1988년에 대법원의 판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법인격부인에서 귀착하는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민사적 책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판례에 의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형사적 책임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되어 형사적 책임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I. ESG경영

2.1 ESG의 개념

많은 경제주체들에 의한 경제활동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ESG에서 비롯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인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의 내용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ESG의 개념이 대두되었다(손영화, 2021).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ESG 즉 환경(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며, 각 요소는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en-Amar et al., 2017). ESG경영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강원·정무권, 2020). 따라서 기업 발전 과정에서 ESG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ESG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는 각각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말하지만 이를 통합한 ‘ESG경영’과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안수현, 2021). 기업에 따라서는 E(환경)를 중시할 수도 있고 S(사회)를 주목하여 경영에 접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준법경영이라는 측면 외에도 환경 및 사회분야를 의식한 경영이 확산된 배경에는 종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없지 않다. 즉 환경과 사회분야를 의식하여 기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SEC, Climate, ESG, and the Board of Directors. 2021).

2.2 ESG의 구성요소

2.2.1 환경(Environment)

경제 발전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직면한 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 자원 부족 등 문제

가 국가 경제 발전과 활동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강원·정무권, 2020). 환경 문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각국은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그에 맞는 환경지표를 만들어 환경보호 활동을 시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모든 기업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책임을 이행해야하고 환경 책임을 이행하려면 자발적으로 환경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자신의 환경 보호 노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Jaggi & Zhao, 1996).

2.2.2 사회(Social)

기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갑두, 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주주, 직원, 전체 사회 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Turban & Greening, 1997). 기업은 사회 책임 활동 참여를 통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와의 관계를 더 좋게 지속할 수 있다(권용만, 2019).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사회 수준이 높은 기업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회 책임 활동이 사회 수준의 평가 요소가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다.

2.2.3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구성원인 주주, 경영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지분의 관계 간의 대리인 비용을 방지하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최현섭, 2011). 지배구조의 최적화는 대리인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장하여 대리인 비용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권재열, 2019). Black et al.(2006)은 주주 권리, 이사회, 사외이사, 지분 집중도, 공시제도, 소유권의 일치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수준을 측정하여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의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 능력이 더 강하고 대내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기업의 손실을 축소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안수연, 202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SG문제중에서 지배구조 공시가 가장 먼저 공시되었으며(손영화, 2021), 한국은 지배구조에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기업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권용만, 2019).

2.3 ESG경영과 기업의 지배구조

2.3.1 이사의 의무

ESG경영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업의 감시 및 관리에 관한 이사의 의무는 대체로 선관주의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회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말하는데, 이사가 주의를 다해 직무집행을 하는 능동적 의무이면서 이사가 주의를 다 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책임추궁이 있는 경우 항변이 가능하다(안수연, 2021). 이에 따라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지 않고 수행되도록 하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 관리체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사는 업무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닌 것이 된다. 하지만 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이 적절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법률의 변경 시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되어 이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안수연, 2021).

2.3.2 법인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권용만, 2019). ESG경영의 지배구조는 이사의 지각을 촉구하고 그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상법의 규정(상법 제393조 2항)이지만, 기업의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하는 이사의 의무관련 제도에서 불명확과 장애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이사회 내지 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것들이 형해(形骸)화되고 있고, 특히 일부에서는 법률관계를 간편화와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법인격부여가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의무를 회피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인관계인의 책임에 대한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게 법인격을 부인하고 직접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Ⅲ. 법인격부인의 의의

3.1 법인격부인의 이론적 배경

법이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며, 또 단체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의 재산 주체로 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격 부인의 이론적 근거로거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된 회사가 주주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주주와 동일체라거나, 주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모두 비유적인 표현이고 법적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이철송, 2012). 독일과 일본에서는 주로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인격 부인의 근거로 신의칙 내지는 권리남용 금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권재열, 2019).

3.2 법인격부인의 의의

법인격부인(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권재열, 2019).

3.3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

3.3.1 객관적 요건

국내 및 외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법인격 부인을 위한 객관적 요건은 ① 지배의 완전성, ② 재산의 혼용, ③ 채권자의 권리침해, ④ 자본의 과소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에 관하여 대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形骸)'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및 법인격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권재열, 2019). 뿐만 아니라 정립된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권재열, 2019).

3.3.2 주관적 요건

최근에는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권재열, 2019).

3.3.3 요건의 판단시점

이상의 법인격 부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요건은 언제 구비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가지는 보충성(Subsidiariät)으로 인하여 현행법상 모든 구제수단이 소진된 후에야 적용된다. 결국 실제 법인격 부인이 널리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권재열,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인격 부인 인정 범위를 일정한 경우의 법인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제(fiction)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법인격 부인을 판단하는 시점마다 다르게 한다면, 일정한 행위가 존재하는 때마다 판단을 기다리는 번잡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3.4 법인격 부인의 효과

법인격의 부인은 회사의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된 특정사안에 한하여 지배주주로부터 회사의 법적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회사의 문제된 채무가 바로 주주의 그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인격부인의 주된 효과이나, 공평의 원칙상 문제된 거래의 부수적인 효과도 모두 주주에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이철송, 2012).

IV. 법인격 부인의 적용과 민사적 책임

법인격 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성문법상의 기본질서를 무시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권재열, 2019). 법인격 부인의 근거는 실정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권리남용금지 규정; 제2조 제2항, 신의성실 규정; 제2조 제1항)과 상법의 규정(회사법인성 규정; 제171조 제1항)을 주로 준용하고 있다(안동섭, 1990). 이론적으로 ① 이용된 회사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그 회사와 주주를 하나로 보거나(identity), 회사를 주주의 신분(alter ego)으로 주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동일체(또는 분신)로 보는 것이 있고, ② 회사를 주주의 대리인으로 보는 데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있고, ③ 회사는 주주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있다.

4.1 법인격 부인에 따른 민사책임

법인격 부인의 효과는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거래상의 채무를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이철송, 2012). 따라서 그 회사의 주주는 제3자와 한 당해 거래상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 이 때 주주의 책임 범위는 그 거래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4.2 불법행위의 추궁

최근 자동차 운송, 해운, 항공, 건설과 같이 타인을 가해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 또는 대형 공작물의 제조, 사용과 같이 우발적 가해의 위험이 높은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일반인의 생활접촉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런 한편, 그 사업자들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고자 소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추궁에 있어서도 법인격 부인을 적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한편,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주체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일환으로 특별법에 정한 보험제도가 있다. 그 점은 법인격 부인의 적용에 일부 제한이 있

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채무자의 신용을 금리에 반영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등 사전에 채권보전이 가능하므로 사후에 법인격 부인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줄 필요가 없고, 법인격 부인의 근거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이라고 하지만 그 요건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회사법인격의 형식을 지켰는지 여부는 지배주주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자본 적정성의 요소와 형식적 무시요소(non-observance of formality) 등의 법인격 부인의 요소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불법행위채권자의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이 불법행위 사건에는 드물게 인정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비용을 들여 법인격 부인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다는데서 법인격 부인의 폐지를 주장이 있다(박규진, 2014).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지만(김인현, 2007),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고 법인격 부인만으로 법인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데는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V.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

5.1 도입의 필요성

법인격 부인의 적용이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 범위 또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인관계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계약체결을 통한 손해배상예정액 약정 등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민사적 책임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이외의 방법은 현행의 제도로는 도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5.2 특수한 형태의 행위에 대한 제한적인 인정

범죄의 주체인 사람에 관하여 자연인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법인도 포함되는가 하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쟁이 있으나 ‘법인에 있어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인 자연인의 행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요, 그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법인이 범죄능력을 부인하고 있다(임웅, 2012). 그러나 법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하여 인정하는 입법이 있지만 자연인의 과실 책임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그 책임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편이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입법을 통하여 법인의 책임 외에 자연인의 책임을 고의 수준의 형벌에 상응하는 처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5.3 현행 제도에서의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

자본주의 발달과 경제규모의 기하급수적 확장에 따라 수천억에서 수조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사업에 자연인이 입찰에 응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자연인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면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대한 프로젝트에 입찰하기 위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아주 작은 규모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방조제의 경우 현재 상태를 보면 바다인지 호수 인지 구별할 수 없는 커다란 호수가 있다. 그런데 그 호수는 믿을 들여다 볼 수 없을 만큼 호수 물이 오염되어 있다(안호영, 2020).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많이 있지만 그 책임을 부담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은 없다. 위와 같이 우리의 생태계를 크게 파괴하는 사업을 한 법인은 물론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에 관련한 자연인은 과실이 없는 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제도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그 법인의 관계인, 즉 자연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고의에 준하여 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5.3.1 현행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조치의 범위

우리나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이득 가액이 일정한 액수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법인관계인(자연인)의 법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격 부인이 상정할 형사적 처벌은 아니다. 법인은 사회경제적 인격체로서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인격체이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의 보호 즉 법인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요청되는 당연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을 믿고 거액의 자본을 투하하였는데 법인격이 형해(形骸)화 되고 법인의 권리가 남용되어 주주(법인을 포함)인 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만을 부과하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면 이는 법 감정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위와 같은 경우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자연인인 법인 관계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5.3.2 형사적 책임에 대한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격 부인과 관련하여 우리는 일본식 이분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그 핵심 쟁점인 적용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박원희, 2017). 따라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법인격 부인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박원희, 2017).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김인현, 2007).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은 민사적 책임에 관한 점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나친 사적 이익추구는 결과지상주의, 혹은 물질만능주의에 도취되어 소위 ‘돈이면 다 된다’라는 사고가 만연할 수 있다.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법인관계인의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법인격 부인의 선제 도입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I. 결론

기업의 지배구조측면에서 회사경영진이 ESG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같은 법인격을 이용하여 책임의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에 대한 책임을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의 형사적 책임으로 좀 더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격 부인이 도입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에서 1879년 영국의 House of Lord에서 Salomon vs. Salomon 회사 간의 소송에 관한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그 때 영국은 이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미국, 독일, 일본에도 차츰 이 이론을 받아들이다가 일본에서 1960년 ‘일종의 권리남용으로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이 이론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 인정하여 민사적인 책임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인관계인이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비추어 더 무거운 형사적 처벌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의 이론에 충실하면서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여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하는 기업(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나아가 ESG경영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른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

- 강원·정무원(2020),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한국증권학회*, 49(5), 681-707.
- 권용만 외(2019), *경영학의 이해(제 3판)*, 삼영사.
- 권재열(2019), *한국회사법의 경제학(제 2판)*, 도서출판 정독.
- 김인현(2007), 해상사건관련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29(2), 37-67.
- 박규찬(2014), 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 *기업법연구*, 28(2), 179-209.
- 박원희(2017),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미국·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 글로벌비즈니스 법학연구*, 9(1), 31-84.
- 손영화(2021), ESG 활성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판례연구*, 34(3), 3-82.
- 안동섭(1990), *상법원론(하)*, 법지사.
- 안수현(2021),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경제법연구*, 20(2), 63-115.
- 이철송(2012), *상법강의(제 13판)*, 박영사.
- 최현섭(2011), 기업 지배구조와 환경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0, 409-430.
- Ben-Amar, W., Chang, M., & McIlkenny, P. (2017), Board Gender Diversity and Corporate Response to Sustainability Initiatives : Evidence Project, *Journal of Business Ethics*, 142, 369-383.
- Black, B. S., Jang, H., & Kim, W. (2006), Does Corporate Governance Predict Firms' Market Values?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22(2), 366-143.
- Jaggi, B. & Zhao, R.(1996),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Reporting: Perceptions of Managers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in Hong Ko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1(3), 333-346.
- SEC, Climate, ESG, and the Board of Directors(2021); You Cannot Direct the Wind, But You Can Adjust Your Sails, *Keynote Address at the 2021 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National Conference*, June 28.
- Turban, D. B. & Greening, D. W.(1997),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Attractiveness to Prospective Employe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3), 489-500.
- 〈기타〉
- 안호영(20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국회, 2020. 10. 8.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rtificial Person(Natural Persons) with a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in ESG

Kim, Dong-han¹⁾
Kwon, Yong-man²⁾

Abstract

Although management decisions centered on the board of directors and directors must be made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ESG management, the company's management is not obligated to make decisions considering ESG factors. A Korean corporation(company) is an established organization for commercial or other profit, and the purpose of treating a legal organization as a corporation is to easily handle the legal relationship of a group (corporate's property) and individual property of a group member, but legal person such as rights to "harm public rights" or "defend fraud".

Criminal liability for illegal acts of a corporation, but the liability of a corporation (natural person) for illegal acts of a corporation is recognized within a limited range, but the criminal liability of a corporation (natural person) is limited. A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is great, limiting the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related person (natural person) to civil responsibility will halve its effectiveness if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corporation's national economy.

Objective requirements such as the completeness of control, hybridization of property, infringement of creditors' rights, and small-capitalization, and the subjective intention of abusing the company system to avoid legal application to controlling shareholders should be denied. Despite the increasing influence on corporate society, such as large-scale projects and astronomical business profits, corporate officials (natural persons) are forced to be held liable for negligence and intentional liability within a limited range.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riminal responsibility separately from civil responsibility to legal persons (natural persons) in consideration of the maturity of capitalism in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status of the world.

In Korea,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corporate denial are strict, but the United States says that it is sufficient to have control or fraud. Therefore, it is not about civil responsibility, but about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legal person (natural person), so if fraud is recognized, it can strengthe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Keyword: ESG Management,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ivil Responsi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1)Author,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Namseoul Univ, sinks9923@naver.com

2)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Nam Seoul University, ymkwon@nsu.ac.kr

저 자 소 개

- 김 동 한(Kim, Dong-han)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법무법인 광복 고문
- <관심분야> : 법인격 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경영

교 신 저 자 소 개

- 권 용 만(Kwon, Yong-man)
 -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국무조정실 실내대학 전담교수
- <관심분야> : 노사관계, ESG경영, 역량개발